2020년도 제1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o 일 시: 2020. 7. 3.(금요일), 10:30
-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정현, 홍지만 위원
-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11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분과위원
3. 안건상정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 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654건(안건번호 제2020-60954호~61872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60954호~60956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출판, 영화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 권고를 가결함. 다만, 안건번호 제2020-60955호, 60956호 게시물은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권고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651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26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1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5쪽의 민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 민원인 신고내용, 6쪽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달린 댓글, 7쪽의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참고로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미리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민원인 신고내용, 심의대상 게시물에 달린 댓글, 저작물명 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C 위원, D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인 신고내용, 심의대상 게시물에 달린 댓글, 저작물명 등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

는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mbn', 'tvn',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일본 NTV', '미국 NBC',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NEW)', '넷플릭스', '미국 FOX', 'TV조선'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위원, B 위원, C 위원, D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654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2020-60954호~61872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0954호는 출판 '●● ●●●'의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해당 저작물을 20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음.

참고로 해당 저작물은 '○○○○'에서 2019. 5. 14. 출간되었고, 총 2 3권으로 완결되었음. 합법저작물 단권 판매가는 약 3,200원임.

(민원인 신고 내용을 제시하면서)민원인은 '★★★★★★ ★★ ★★ ★★ ★ ★ ★ ★ 출 제출하였는데, 저작물명이 지워져 있고 알려진 저작자명과 계약서상 이명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민원인이 저작권자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함. 보호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출판 '●● ●●●'의 이명은 '☆☆'이나,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의 이명 란에는 '◎◎◎'라고 적혀 있음.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면서)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저작물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원래부터 저작물명이 명시되어 있 지 않은 것인지 민원인이 저작물명을 지운 후 제출한 것인지 확인되 지 아니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0955호, 60956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를 125 포인트, 120 포인트에 각각 판매한 사안임. 다만 두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함. 참고로 해당 영화는 2020. 6. 4. 개봉하였고, 2020. 6. 24.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해당 영화는 '◆◆◆ ◆◆◆ ◆◆'에서 16,390에 구매, 11,000원에 대여 가능함. 배우 '□□□', '■■■'이 실연하였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민원인 신고 내용, 침해증거자료와 함께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주시기 바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 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609 54호~6095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안건번호 제2020-60954호~60956호의 저작물은 시중에서 판매 중이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안건번호 제2020-60955호, 60956호심의대상 게시물은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위원님과 같은 생각임.
- A 위원: 동의함.
- D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6095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0-60955호, 60956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0957호~61872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를 웹하드 등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그중 일부 안건을 설명하겠음.

(방송 '나는 자연인이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0 963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해당 방송물 405회를 63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2012. 8. 22. 방영을 시작하였고, 현재 406회까지 방영됨.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회당 1,650원에 구매 가능함. 2019년에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1위에 뽑히기도 하였음. 해당 방송물은 최근 불법복제물로 꾸준히 발견되고 있음.

(방송 '코미디빅리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1044 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해당 방송물 364회를 7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예능 방송 프로그램은 'tvn' 채널에서 2011. 9. 17.에 방영을 시작하였고, 현재 365회까지 방영됨. '닐슨 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364회 시청률은 2.1%임.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회당 1,650원에 구매 가능함.

(방송 '맛있는 녀석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107 4호는 웹하드에서 2020. 6. 14.에 방영된 해당 방송물 264회를 70포 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2015. 1. 30.부터 방영 을 시작하였고, 현재 365회까지 방영됨.

(영화 '비밀정보원: 인 더 프리즌'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1380호는 밴드에서 영화 '비밀정보원: 인 더 프리즌'을 제공한 사안임. 해당 밴드명은 '▲▲▲'이며, 회원 수는 총 14명인 공개밴드임. 밴드에서 한글 자막이 포함된 MP4 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영화는 한국에서 2020. 4. 15. 개봉하였으며, 영국에서는 2019. 8. 30. 개봉하였음. '클라이브 오웬', '로자먼드 파이크' 등이 출연하였음.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5,000에 구매 가능함.

(영화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61412호는 웹하드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온워드: 단 하루의 기

적'을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6. 17. 개봉하였으며, 현재 극장 상영 중임. 저작권사는 '디즈니·픽사'임.

(영화 '언더워터'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1469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언더워터'를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 020. 5. 27. 개봉하였고,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7,700원에 대여 가능함. 배급사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임.

(영화 '콜 오브 와일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15 35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콜 오브 와일드'를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소설 '야성의 부름'을 영상화한 작품으로 '해리슨 포드'가출연하였음.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국내에 수입·배급하였으며, 2020. 5. 14. 극장 개봉을 시작으로 현재 상영 중임. 모바일 웹하드에서 한글 자막이 포함된 mkv 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최근에 해당 영화의 불법복제물이 많이 발견되고 있음.

(영화 '블러드샷'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1607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블러드샷'을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밸리언트 코믹스'의 동명 만화를 영상화한 작품임.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0,000원에 대여, 14,900원에 구매 가능함. 최근 해당 영화의 불법복제물이 많이 발견되고 있음.

(음악 '전화통신 (가수: 주현미, 이찬원)'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 건번호 제2020-61777호는 웹하드에서 음악 '전화통신'을 포함한 총 2 2곡을 370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음원은 방송 '내일은 미스터트롯', '뽕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터'에서 실연되었고, 네이버 스트리밍 서비스인 'VIVE'에서 곡당 700원에 구매 가능함.

(유튜브에서 음악 '전화통신 (가수: 주현미, 이찬원)'의 영상물을 재생하면서)직접 해당 음원을 들어보도록 하겠음. 'TV조선' 채널의 '뽕숭아 학당' 프로그램에서 해당 음원을 실연한 것으로 보임. 해당 음원

을 유튜브로 감상할 경우 콘텐츠 ID 정책에 따라 수익을 권리자나 방송사에게 배분함.

이것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음.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심의안건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심의안건 중에 공표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저작물들이 있음.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한된 모니터링 재원을 활용하는 데에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저작물의 공표시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채증해야 할 것으로 보임.
- D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을 확인하시어 안건번 호 제2020-60957호~6187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B 위원, C 위원, D 위원: (심의안건과 증거자료를 확인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0957호~61872호는 모두 불법복제물을 공중의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60957호~61872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60954호~61872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1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7. 17.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재화

위원 위정현

위원 홍지만